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4월 23일(화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3.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

2013년 4월 27일(토)

## 4. 개정근거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법률 제11690호, 2013.3.23 시행)

제4조

나. 「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

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(법률 제11248호, 2012.8.2 시행) 제18조

## 5. 검토의견

0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, 「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조정하며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 개정에 의거 자활공동체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## 6. 관계법령

#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13.3.23] [법률 제11690호, 2013.3.23, 타법개정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###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[시행 2012.8.2] [법률 제11248호, 2012.2.1, 일부개정]

제18조(자활기업)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상의 사업자로 한다.

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,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
2. 국유지·공유지 우선 임대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4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
5.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

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